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어 르 신 복 지 과

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 미 시

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원활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의2)

- (당초) 2026년 12월 31일 → (변경) 2031년 12월 31일

나. 용어 및 인용사항 등 정비(안 제5조, 제6조, 제8조의2,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※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(2026. 4. 20.)
※ 구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(2026. 4. 27.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3조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예치하거나 「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

제8조의2제3항 중 “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중 “노인복지담당”을 “소관업무 담당 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추어 두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 2031년 12월 31일 ----------.
제5조(기금운용관리) ① (생 략)	제5조(기금운용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적립기금은 「은행법」 제3조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·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예치하거나 「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----------.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①·② (생략)	제6조(위원회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사무의 위탁) ①·②	제8조의2(사무의 위탁) ①·②
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, 위탁의 방법·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③ ---------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----------.
제9조(회계관직 지정)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,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.	제9조(회계관직 지정) ① ----------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기금출납원 : 노인복지담당	3. ---------- 소관업무 담당 팀장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갖추어 두고 ----------.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

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생 략

소 관 부 서		어르신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최 창 수
	팀 장	이 경 자
	담 당 자	배 주 연 (480-5153)